

충청북도청풍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264호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04년 월 일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- 교육기본법 제8조 및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23조제1항제4호 규정의 적용·시행으로 2004년부터 중학교에 대한 의무교육이 전국적으로 실시됨에 따라
- 중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요인의 상실과 고등학생·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액을 현실화하고 지급대상자 수를 확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중학교 신입생·재학생 삭제(안 제7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충청북도청풍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청풍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중 “중·고등학교 및 대학교”를 “고등학교 및 대학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문 대조표

현	개
행	정
안	안
<p>제7조(장학금 지급대상) 장학금 의 지급대상은 충청북도 도민 의 자녀로서 <u>중·고등학교</u> <u>및 대학교</u>에 재학중인 학생 (신입생 포함)으로 한다.</p>	<p>제7조(장학금 지급대상)<u>고등학교</u> <u>및 대학교</u>.....;</p>

관계법령 발취

□ 교육 기본법

제8조 (의무교육) ①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. 다만,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.

②모든 국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

□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

제23조 (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) ①교육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행정구역상 읍·면지역 거주하는 중학교 학령대상자
2. 별표 1의 도서·벽지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 학령대상자
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초등학교를 학구로 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 학령대상자
4.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지역으로서 특별시·광역시 및 시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 학령대상자
5.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중 중학교과정 교육대상자

②삭제<2001.10.20>

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로 된 자는 행정구역의 변경 또는 초등학교 학구의 변동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.

□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

제2조 (특별시·광역시·시 지역의 중학교 의무교육확대에 따른 적용례 등) ① 제23조제1항제4호 개정규정은 2002학년도 입학자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한다.

②제23조제1항제4호 및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대상자가 아닌 자가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동 거주지의 학교군 또는 중학구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 한하여 의무교육대상자로 본다.